

고발장

고 발 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34(서초동 신정빌딩 5층)
 전화 02-522-7284. 전송 02-522-7285

피고발인 황교안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죄 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발하오니 피고발인을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취지

피고발인은 2012. 1. 4. 경 성명불상의 중소기업체 사장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특별사면을 청탁 또는 알선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므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이유

1. 피고발인의 지위

피고발인은 2011. 9.경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퇴직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3. 2.경 법무부장관에 취임하였고, 현재는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2. 혐의사실

가.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

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17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89 판결 등).

나. 피고발인의 범죄행위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자료 및 처리 결과’를 보면, 피고발인은 2012. 1. 4. 성명불상 의뢰인으로부터 특별사면 자문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액수 미상 수입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발인은 “의뢰인에게 사면 절차에 관한 자문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① 피고발인은 2011. 9.경 검찰청 고위직으로 퇴직한 자라는 점, ② 이명박 정부의 제6차 특별사면이 단행된 날은 그로부터 8일 후인 2012. 1. 12.인 점, ③ 피고발인은 청와대의 사면업무를 총괄하는 정진영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법무부의 사면업무를 총괄하는 권재진 당시 법무부 장관과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사법연수원 교수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는 점, ④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단순히 특별사면의 절차를 모를 리가 없고, 설령 모른다고 하여도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고액으로 추정되는 수입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⑤ 단순한 특별사면 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이었다면 수십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피고발인은 수입료의 액수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액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⑥ 의뢰인이 단순히 특별사면 절차를 상담 받고자 하였다면 종전 자신이 형사처벌 받은 사건의 변호인에게 특별한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⑦ 피고발인이 단순한 특별사면에 대한 자문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의뢰인과 수입료 액수를 밝히면 될 일을 청문위원들과 많은 국민들로부터 범죄행위의 의혹을 받으면서도 현재까지 의뢰인이 누구인지, 수입료 액수가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발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특별사면의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특별사면을 취급하는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 받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피고발인은 의뢰인이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범죄 행위는 완성 되고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알선수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신속한 수사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

가.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피고발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알선수재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으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를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하여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압수수색의 필요성

피고발인은 국회 청문위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 자문 건’에 관한 의뢰인이 누구인지, 수임료 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수입료 액수 및 구체적 행적은 국세청, 피고발인 및 의뢰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고발인이 자신하여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신속하게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5. 6. 12.

위 고발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귀중